

# 고대 독점금지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Antitrust Thoughts in the Ancient Near East

이의영

- I. 서론
- II. 고대 바빌로니아의 독점금지
  1. 노예소유의 독점금지
  2. 토지소유의 독점금지
  3. 기타 독점금지
- III. 고대 이스라엘의 독점금지
  1. 노예소유의 독점금지
  2. 토지소유의 독점금지
  3. 기타 독점금지
- IV. 고대 독점금지의 비교
  1. 함무라비법과 모세법의 관계
  2. 유사점
  3. 차이점
- V. 결론

## Abstract

This research is designed in the view that a good economic policy, promoting the welfare of human beings, is generally originated in the Bible.

There has been research that the Codes of Hammurabi is the origin of the antitrust law. This research traces the origin of the antitrust policy, an important tool to correct the bad economic performance of the Capitalism, to the Bible. The contents are divided into two major parts, in large. The first part is inquiring into the antitrust thoughts in the Law of Moses and the Codes of Hammurabi. The other is to do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two to clarify that the Law of Moses in the Bible is an origin independent to the Codes of Hammurabi which is earlier than the former. It i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that the Law of Moses, which is from God, has antitrust thoughts. The Law of Moses is independent to the Codes of Hammurabi, especially in the light of antitrust.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the Law of Moses which is from God is an origin of antitrust, and the thoughts of the Year of Jubilee and the Year of Sabbath in the Law of Moses are the origin of antitrust thoughts.

## I. 서 론

근대 경제사회에 있어 독점금지정책(antitrust policy)은, 경쟁원리가 자원 배분에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는 전제<sup>1)</sup>하에 완전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

1)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 v. U.S., 435 US 679, 681, 1978.

시켜 발생한 불법적인 거래와 독점으로부터 거래행위를 보호하고자<sup>2)</sup> 시행되어 왔다. 독점금지정책은 시장경제원리를 주축으로 하여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나타난 근본적 폐해를 교정하고자 시도되어 온 유효한 경제정책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공정한 소득 및 부의 분배 나아가 경쟁적 시장 기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장성과를 추구하고 있다.

다수 인간의 복지증진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회제도는 대부분 성경에서 그 사상적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sup>3)</sup>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인간이 만든 제도라 할지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제도나 사상이 지향하는 바 근본정신은 그 기원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복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가장 원하시며 또 그러한 뜻과 방법을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수정함에 있어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독점금지정책의 기원이 구약성경의 모세법에 있음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문명 세계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모세법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는 바, 본 연구는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두 법인 함무라비법과 모세법 간의 관계에 관한 고찰과 더불어 독점금지라는 관점에서 고대 근동의 양 법에 나타나 있는 독점금지의 사상과 내용을 비교 분석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의 모세법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배태된 함무라비법과는 별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법체계이며, 아울러 구약성경의 모세법이 함무라비법과는 다른 하나의 독점금지정책의 사상적 기원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sup>4)</sup>

2) 근대 최초의 독점금지법인 미국의 Sherman Act 법안 S. 3445 본문

3) 예를 들면, Marshall은 민주주의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Marshall, P., *Thine Is the Kingdom*, 1984, p. 59.

4) 이의영, “독점금지의 기원 고찰”, 「산업조직연구」(1994)는 고대의 법에 나타나 있는 독점금지의 내용을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둘으로써 독점금지의 기원이 고대의 문헌에 연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에 나타나 있는 독점금지의 내용을 고찰하고, 이와는 별도로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여 주신 말씀, 그 중에서도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초로 주신 법체계인 구약성경의 모세법에서 독점금지적인 요소와 사상을 추출해 내려 한다. 이를 토대로 고대 근동의 바빌로니아와 이스라엘의 법체계에 나타난 독점금지적인 내용을 비교 분석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안에서 그 근본적 폐해를 교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독점금지정책의 최초의 기원을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학문적 노력은 아직 시도된 바 없다. 물론 여타 경제사상이나 제도, 사회정치사상의 기원이나 그 뿌리를 성경에서 찾는 연구는 많이 있다.<sup>5)</sup> 또 독점금지와 후대 기독교사상과의 관련성에 관한 일부의 연구가 있기도 하다.<sup>6)</sup> 그렇지만 독점금지의 최초의 기원을 구약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는 경제학 분야 뿐만 아니라 신학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 II. 고대 바빌로니아의 독점금지

원시공동체 사회에도 경제활동은 이미 존재하였다. 그리고 본질상 이기적인 인간의 경제활동은 그때부터 이미 독점적 관행을 발생시켰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sup>7)</sup> 이와 같은 독점적 관행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

---

하고 있음을 최초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고대 두 문명의 독점금지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모세법과 함무라비법의 관계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독점금지 내용의 독립성을 비교연구하여 구약성경의 모세법이 독점금지의 사상적 기원임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5) 예를 들면, George, H., *Progress and Poverty*, 1879; Kee, H. C., *Christian Origins in Sociological Perspective*, 1980.

6) 예를 들면, Van Cise, J. G., "Religion and Antitrust", *Antitrust Bulletin* 1978; Levine, A., *Free Enterprise and Jewish Law*, 1980.

은 최초의 인간 아담의 과다한 소유욕에서 그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기록에 남기 시작한 것은 문자사용이 시작된 고대 사회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독점적 관행에 대한 규제도 역시 일찍부터 어떤 형태로든 존재했었을 것임에 분명하다. 물론 이 시기의 경제활동<sup>8)</sup>에 나타나는 거래는 시장의 모습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원시적인 형태의 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sup>9)</sup> 독점이나 독점금지 등의 개념이 근대적인 것과는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적 성격이나 정신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현존하는 최초의 집대성된 법체계로 알려져 있는 함무라비법전<sup>10)</sup>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대 근동의 문명지였던 메소포타미아<sup>11)</sup> 지역의 바빌로니아에서 이루어진 독점금지를 분석하려 한다. 함무라비법전은 독점에 대한 금지의지의 표현이 나타나는 최초의 문헌<sup>12)</sup>으로 대략 기원전 1700~1800여년 전<sup>13)</sup>의 것으로 간주되는 바, 이 함무라비<sup>14)</sup>법에 배태되어

7) von Kalinowski는, 독점적 관행의 기원을 사람이 사회적 동물로서 존재했을 때부터라고 한다. von Kalinowski, J. O., *Antitrust Law and Trade Regulation*, 1994, p. 2~13.

8) 고대 사회의 경제에 관하여는, M. I. Finley, *The Ancient Economy*, 1973, 참조

9) 경제인류학자 Polanyi는 거래 또는 교환관계를 신분적 거래와 경제적 거래로 구분하여 고대 이전사회에서의 거래관계를 신분적 거래라 하고 경제적 거래는 고대 사회부터 출현했다고 한다. K. Polanyi, *The Livelihood of Man*, 1977, ch.5 참조

10) 물론 이보다 앞선 법전들(Codex Ur-Nammu, Codex Eshnunna, Codex Lipit-Ishtar)이 있지만 그들은 부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그러한 법체계들을 종합하여 집대성하고 그 이후의 법체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최초의 것은 함무라비법전(Codex Hammurabi)이라 할 수 있다.

11)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하여는, H. C. Boren, *The Ancient World*, 1976, ch. 2 참조

12) 이의영, “독점금지의 기원 고찰”, 「산업조직연구」, 1994.

13) Rowton은 함무라비의 연대를 1792~1750 B.C.로 계산하고 있고, Oppenheim도 이 견해를 따른다. Rowton, M. B., “The Date of Hammurabi”,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1958, p. 111; Oppenheim, A. L., “Hammurabi”,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1962, p. 517.

그러나 함무라비의 연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Rowton에 따르면, 늦은 연대로는 1581 B.C. 전후부터 빠른 연대로는 1900 B.C. 전후까지 다양하다. Gordon은

있는 독점금지적인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고대 바빌로니아의 독점금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노예소유의 독점금지

노예제도는 고대 근동지역의 여러 나라에 널리 유포되어 있던<sup>15)</sup> 사회경제적 제도이다. 노예는 일반적으로 전쟁포로의 경우나 채무변제 실패에 따른 경우에 의해 발생하였다.<sup>16)</sup> 농사에 따르는 채무를 일반적으로 추수 후에 갚도록 하던 당시의 관행과 관련하여 추수 후에도 채무변제에 실패하는 경우 자신이나 가족의 일원이 노예로 팔려감으로써 노예가 되었다.<sup>17)</sup> 노예제도는 사회계층구조로서 당시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노동에 의한 농사 및 목축 등의 생산활동에 중요한 수단 또는 생산요소로서의 의미와 더불어 재산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경제적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소유의 집중은 곧 부의 집중을 의미하였으며, 계속적인 분배의 불공평을 유발할 수 있었다. 즉 빈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에 있어 노예문제에 대한 해법의 제시가 다

---

1704~1662 B.C.로 그 연대를 잡고 있으며, Bohl도 1700 B.C.경으로 간주하고 있다. 가장 빠른 연대로는 Harper가 함무라비법전을 2250 B.C.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Gordon, C. H., *Hammurapi's Code*, 1957; Bohl, F. M. T., *King Hammurabi of Babylon in the Setting of His Time*, 1946; Harper, R. F., *The Code of Hammurabi King of Babylon*, 1904.

14) 함무라비는 창세기 14장 1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시대의 시날왕 아므라벨과 동일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Cook, S. A., *The Laws of Moses and the Code of Hammurabi*, 1903, p. v. 그러나 이러한 추정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Johns, C. H. W., *The Relations between the Laws of Babylonia and the Laws of the Hebrew Peoples*, 1914, pp. 18~20.

15) Mendelssohn, I., *Slavery in the Ancient Near East*, 1940, p. 121.

16) Ibid.

17) Chirichigno, G. C., *Debt Slavery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Israel*, 1989, pp. 195~196.

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sup>18)</sup> 이에 대한 바빌로니아의 입장은 함무라비법에 나타나 있다. 함무라비법에 있어 노예에 관한 조항은 제117~119조, 제278~282조, 제15~17조 등이다.

특히 함무라비법 제117조는 노예의 영구적 소유를 금하고 있다. 제117조에 의하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는 경우, 대신 아내나 자녀를 팔거나 또는 자신이 노예가 되어 3년 간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여야 하며, 4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되찾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채무변제 불이행에 의해 팔려간 노예에 관한 규정으로 경제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노예는 당시 초보적인 생산경제에 있어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재산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조항의 고찰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함무라비법 제15~20조는 도망간 노예의 처분에 관한 조항이다. 이에 의하면, 노예의 도망을 협조하거나 도망간 노예에게 온신처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도망간 노예를 부당하게 소유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신 도망간 노예를 불잡아 주인에게 되돌려 주면 포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8~119조는 노예를 사고 팔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제278~282조는 노예를 사고 팔 때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예를 주인의 소유물, 즉 재산으로 간주하여 재산권 보호적인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조항으로 이를 통해 노예가 가지는 재산으로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노예가 이와 같은 경제적 의미를 가진다고 했을 때, 채무불이행에 따라 팔려간 노예의 영구적인 소유가 인정된다면 계속적인 노예의 추가적인 소유는 부 및 그에 따른 소득의 집중, 즉 경제력 집중을 의미하게 된다. 즉 이는 필연적으로 독점적인 경제현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노예소유에 따른 이러한 경제력의 편중된 집중현상은 노예소유자와 다른 자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한 노예소유자와 노예와의 관계에

18) Epstein, L.,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People of the Bible*, 1986, p. 119.

있어서도 역시 그러하다. 이에 함무라비법 제117조는 중요한 생산요소이자 재산으로서의 경제적 의미를 가지는 노예의 지속적이고 과다한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독점을 금지하는 결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노예의 영구적인 소유를 금지하는 법조항인 함무라비법 제117조는 독점금지적 사상이 내포되어 있는 규정이라 하겠다.

함무라비법 제117조에 관한 과거의 연구들은 신분제도나 인도주의적인 법정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채무변제의 방법이나 크기의 정도라는 시각으로만 해석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이를 경제력 집중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공평성이 강조되는 독점금지적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결론짓는 것이다.

## 2 토지소유의 독점금지

당시 고대 근동지역은 농업이 상당히 발전하여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서 경제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sup>19)</sup> 이와 같은 여건이 반영되어 함무라비법은 가장 많은 조항(42~66조)이 농업에 관한 규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토지에 관한 내용도 일부 다뤄지고 있다.

고대 근동지역 특히 바빌로니아에서 땅은 공동체 공유의 토지와 더불어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인정되어 있었다.<sup>20)</sup> 그러나 함무라비법에는 토지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토지와 관련한 규정은 있다. 제26~41조에는 공유지를 관리하는 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공유지를 왕의 허락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제42~47조는 사유토지의 임대와 관련한 규정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정당한 토지소유권의 이전과 관련한 조항들이 아니다. 전자는 소유권자가 아닌 관리공무원의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토지소유의 문제가 아닌 토지임대의 문제로 토

19) David, M., "The Codex of Hammurabi and Its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Law in Exodus", *Oudtestamentische Studien*, 1950, p. 156.

20) Cook, S. A., *The Laws of Moses and the Code of Hammurabi*, 1903, p. 182.

지소유의 독점금지와 관련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즉 함무라비법에서는 토지소유의 독점을 금지하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독점금지적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3. 기타 독점금지

당시는 이미 초보적인 형태의 경제적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거래관계에서 필연코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책의 모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노예 소유와 토지소유에 있어서의 독점금지적 요소 이외에 기타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나 부당한 경제행위들을 규제하는 독점금지적인 요소들을 함무라비법전의 관련조항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함무라비법의 곳곳에 보면, 특정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가격<sup>21)</sup>을 지정해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특정의 임료, 임금(품삯)<sup>22)</sup>, 이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그 가격을 지정하고 그와 관련한 지불원칙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다. 즉 제241~249조는 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는 소를 빌릴 때의 임료의 지불에 관한 조항으로 특히 제242~243, 252, 268~270조는 빌리는 소의 용도에 따른 임료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고, 제253~267조는 노동력을 고용하는 경우의 임금에 대한 규정으로 특히 제257~258, 261조는 구체적인 임금을 정해 두고 있으며, 제273조는 계절별(농번기, 농한기)로 다른 임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고, 제274조는 기술자의 임금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68~272조는 탈곡용 가축 또는 수레의 임료에 관한 규정으로, 제271~272조는 수레

21) 여기에서의 가격은 근대적인 시장경제에 나타나는 가격의 개념보다는 교환비율 또는 등가성의 개념이 강하나 편의상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22) 여기에서의 임금은 노동의 상품화에 따른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나타나는 임금의 개념이 아닌 고대의 품삯 또는 履役에 대한 댓가의 개념이나 편의상 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의 임료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제275~277조는 배 등의 임료를 정하였다. 또한 제88~102조는 곡물 또는 화폐 대부에 따른 이자지급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8조는 대부 이자를 지정하고 있다. 제121조는 곡식 저 장시 저장료(보관료)를 지정하고 있고, 제42~48조는 토지 임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격의 지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엄격히 적용되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지정 가격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이 적용됨을 보여 주는 조항들도 있다. 즉 제90조는 제88조에 지정한 대부 이자 이상의 이자를 받는 경우 물수하도록 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94조는 이자를 주고 받을 때 저울 눈을 속이는 경우 모두 물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당시 시장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교환가치 특히 임료 등의 용의권의 가치가 정상적으로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을 것임을 감안할 때 함무라비 법의 많은 조항에서 가격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은 독점력 또는 기타의 힘을 이용한 부당한 가격인상 또는 부당한 착취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독점금지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함무라비법에 구체적인 가격이 지정되어 있는 대상물의 공통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재화의 경우는 없고 거의 모두 임료, 임금, 이자 등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는 별로 언급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항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또는 합의를 중시하는 내용의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52조에 의하면 “그의 계약에 따라서”라는 표현이 있고, 제46조에는 “합의에 따라” 거래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형의 재화인 경우에는 물물교환 등의 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합의, 즉 계약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을 존중하고 있으며, 반면 무형의 임료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가격결정의 관행이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법에 의해 그 가격을 지정함으로써 부당한 가격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물물교환 또는 곡물 등을 매개로 하는 교환에 있어 도량형

의 통일을 통한 공정한 거래를 규정하고 있다. 제51조에 의하면 도량형은 왕에 의해 정해진 것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94조는 이자를 주고 받을 때 지불수단으로서의 곡물이나 다른 재화를 계측하면서 저울 눈을 속이는 경우 이를 모두 몰수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고대 바빌로니아에서의 거래관계에 있어 비록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불공정한 독점적 거래관행이 사회적 문제가 될 만큼 팽배해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러한 거래관행을 시정 코자 하는 독점금지적 입법의 모습이 있었음을 함무라비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

### III. 고대 이스라엘의 독점금지

성경에도 일찍부터 독점적 관행이 발견된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서 나와 베엘에 이르러 함께 거할 때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가축을 위한 초지나 우물 등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23)</sup> 그런가 하면 요셉 때에 이르러는 곡식을 국가가 독점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애굽에 7년 간 풍년이 들었을 때 국가가 여분의 곡식을 모두 사들여서 그 후 7년 간 흉년이 들었을 때 국가가 독점적으로 곡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근방의 흉년든 이웃나라에 대해서도 곡식의 독점적 교역을 시행하였던 것이다.<sup>24)</sup>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생활을 하는 중에도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횡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모세법에 보면 거래에 사용되는 도량형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두 저울추나 두 되를 두어 사용하지 말고 공정한 것을 사용하라고 규정하여<sup>25)</sup>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23) 창세기 13:1~12.

24) 창세기 41:46~57.

독점금지적 정신은 광야생활 중의 필수품인 식량이었던 만나의 과다한 소유를 철저히 금하고 있는 데에도<sup>26)</sup>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최초로 주신 법체계인 모세법의 관련조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독점금지의 내용과 사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 1. 노예소유의 독점금지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노예제도는 오래된 관행이다. 노아는 범죄한 함을 저주하면서 그의 자손이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였는바,<sup>27)</sup> 이는 이미 당시에도 종, 즉 노예의 개념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르러서는 노예제가 일반화되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여종이었으며,<sup>28)</sup>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 심부름을 보낸 자도 아브라함의 종이었다.<sup>29)</sup> 나아가서는 요셉 시대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하여 살다가 중국에는 종족 모두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부터 해방된 이후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의 광야생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이 곧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인 모세법인 것이다.

구약성경의 모세법은 영구적인 노예소유를 절대 금지하고 있다. 모세법의 영구적 노예소유의 금지규정이 가지는 경제적인 의미는 합무라비법의 분석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여타 고대 근동지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이유에 의하여 노예가 되었다.<sup>30)</sup> 물론 노

25) 신명기 25:13~15, 데위기 19:35~36.

26) 출애굽기 16:1~36.

27) 창세기 9:25.

28) 창세기 16:1~2.

29) 창세기 24:2~9.

예의 경제적인 기능이나 의미도 유사하고, 지속적인 노예소유의 집중이 의미하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도 그러하며, 이에 따른 영구적인 노예소유의 금지가 의미하는 독점금지적 요소도 그러하다.<sup>31)</sup>

구약성경의 모세법에 있어서 영구적인 노예소유의 금지는 안식년제도와 회년제도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모세법에 있어 노예에 대한 안식년 규정은 출애굽기 21:2~11과 신명기 15:12~18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동족인 히브리인이 팔려와 노예가 된 경우 칠년째 되는 해에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되 값없이 할 것이며 나아가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명하고 있다. 신명기에는 남자나 여자 모두 제 칠년 안식년이 되면 노예를 해방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출애굽기에는 남자의 경우에는 칠년째에 노예신분에서 해방을 시키나 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여자의 노예생활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부다처가 관행이던 당시에 있어서 여자노예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인이나 그 가족과 결혼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여자노예를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며,<sup>32)</sup> 주인에 의해 이와 같은 관계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즉시 아무 댓가 없이 여자노예를 자유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33)</sup>

특히 신명기에 있어서 히브리 노예는 노예로서보다는 하나의 백성 또는 형제와 유사하게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노예는 주인에게 그 노동력만을 팔 뿐이며 그 자신을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sup>34)</sup> 그리고 노예와 관련하여 신명기에는 상전 또는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예의 장기적인 소유금지는 회년제도에 관한 규정에서도 발

30) Epsztain, L.,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People of the Bible*, 1986, p. 119.

31) 본 논문 제2장 제1절 참조

32) 출애굽기 21:9~10.

33) 출애굽기 21:11.

34) Epsztain, L.,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People of the Bible*, 1986, p. 121.

견할 수 있다. 회년규정은 레위기 25:8~55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회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 쐄”라고 명하고 있다.<sup>35)</sup> 즉 노예와 그 노예의 모든 가족이 무조건적으로 해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영구적으로 노예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없애버린 것이다.<sup>36)</sup> 회년규정의 대사면은 잠정적인 면제가 아니라 완전한 원상회복인 것이다.<sup>37)</sup>

소득을 위한 생산의 수단이자 노동으로서의 생산요소이며 또한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노예를 소유함에 있어 영구적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모세법의 안식년규정과 회년규정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여 독점적인 경제성과를 방지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모세법의 규정은 독점금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독점금지적 사상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다.

## 2 토지소유의 독점금지

성경에 의하면 토지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38)</sup> 하나님의 소유인 토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서 주어진 것이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청지기, 즉 관리자로서 토지를 보유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토지 그 자체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회년이 되기까지 그 토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생산물의 생산가능성을 사고 팔게 되는 것이다. 즉 토지의 매매가 아닌 토지이용권의

35) 레위기 25:10.

36) 그러나 장기적인 노예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이 안식년규정과 회년규정은 히브리노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노예가 된 타국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레위기 25:44~46 참조

37) van Selms, A., "Jubilee, Year of", *IDBS*, 1976, p. 497.

38) 레위기 25:23.

매매인 것이다.<sup>39)</sup> 그러므로 토지를 사고 팔 때, 회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이웃에게 살 것이요 파는 자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팔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수가 많으면 그 값을 많이 하고 연수가 적으면 그 값을 적게 할찌니 곧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사고 팔라는 것이다.<sup>40)</sup>

구약성경의 모세법은 토지소유의 집중, 즉 토지이용권 소유의 집중을 회년규정에 의해 금지하고 있다.<sup>41)</sup> 전술하였듯이 회년규정은 레위기 25:8~55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그 오십년은 너희의 회년이니 이 회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 즉 토지로 돌아갈찌라고 하였다.<sup>42)</sup> 즉 무상으로 토지소유권을 원상회복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채무 등의 경제력의 빈곤으로 인하여 토지를 파는 경우 소유권 자체의 이전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의 상실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의 빈부격차 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가나안 정착 이후 농경사회를 형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토지의 집중은 곧 중대한 경제력 집중의 요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타인의 토지에 대한 영구적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회년규정은 곧 독점금지적 규정이라 하겠으며 독점금지적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독점금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성과의 대표적인 것으로 효율성과 공평성을 들 수 있다. 그 중 공평성은 3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소득의 공평성, 부의 공평성, 그리고 기회의 공평성이다.<sup>43)</sup> 생산수단인 토지의 불공평한 소유는 당연히 생산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의 공평성을 저해하게 되며, 부의 관점에서는 불공평한 부의 분배로 귀결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토지를 기업으로 인간에

39) 그러므로 본 절에서의 토지소유의 독점금지라 함은 엄밀하게 말하면 토지이용권의 독점금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표현인 토지소유의 독점금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40) 레위기 25:14~17.

41) 토지 이외에 가옥에 관한 회년규정도 있다(레위기 25:29~34). 그러나 이 부분은 독점금지규정으로 해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42) 레위기 25:11~13.

43) Shepherd, W. G., *The Economics of Industrial Organization*, 1990, pp. 164~178.

게 주셨을 때 함께 부여해 주신 경제적 기회의 공평성이 원천적으로 왜곡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년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의 독점을 금지하고 있는 모세법의 정신은 소득 및 부의 분배에 있어서의 공평성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특히 경제적 기회의 공평성을 일정 주기마다 원상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sup>44)</sup>

### 3. 기타 독점금지

노예소유 및 토지소유에 있어서의 독점금지 이외에도 구약 성경의 모세법에는 독점금지적인 정신이 담겨있는 규정들이 있다.

안식년제도의 규정 중에 보면 면제년의 규정이 있다. 면제년의 규정은 신명기 15:1~2에 나타나 있다. “매 칠년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찌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즉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매 칠년마다 채무면제를 명하고 있는 것이다. 채무면제를 통하여 가속화되는 소유집중을 해소할 수 있으며, 경제적 약자에게 새롭게 공평한 출발선상에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 할 수 있는 기회의 공평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면제년의 규정은 소유집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으로서의 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채무의 축적에 따른 생산집중의 가능성을 억제해 주는 독점금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규정이라 하겠다.

그리고 모세법에도 거래에 사용되는 도량형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두 저울추나 두 되를 두어 사용하지 말고 공정한 것을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고,<sup>45)</sup>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도록 하여<sup>46)</sup>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44) 물론 이러한 점은 노예소유의 독점금지규정에서도 같은 의의를 가진다.

45) 신명기 25:13~16.

46) 래위기 19:35~36.

많은 규정은 아니지만 구약성경의 모세법에는 이와 같이 불공정한 거래나 부당한 경제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독점금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모세법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여러 규정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sup>47)</sup>

#### IV. 고대 독점금지의 비교

##### 1. 함무라비법과 모세법의 관계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과 고대 이스라엘의 모세법의 관계에 관하여는 전통적으로 5가지 견해가 있다.

첫번째 견해는 모세법이 함무라비법의 전적인 영향하에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Winckler, Delitzsch, Jeremias, A. 등에 의해 대표되는 범-바빌로니아학파에 의해 주장되었다.<sup>48)</sup> 그러나 이 견해는 새로운 자료와 보다 엄격한 비교분석방법의 도입에 의해 배제되었다.<sup>49)</sup>

두번째 견해는 모세법이 함무라비법의 간접적인 영향하에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Johnston, C.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에 의하면, 바빌로니아법과 모세법은 동일한 문학적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동일한 언어로 표현된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sup>50)</sup> 이는 모세법이 팔레스타인 점령 이후에 형성

47) 추수시 약자 배려 - 레위기 19:9~10, 레위기 23:22, 신명기 24:19~21

품꾼의 산 지불연기 금지 - 레위기 19:13, 신명기 24:14~15.

빈곤자 이자 금지 - 출애굽기 22:25~27, 레위기 25:35~38, 신명기 23:19~20.

빈곤자 구제 및 후대 - 출애굽기 22:21~24, 신명기 14:28~29, 신명기 15:7~11, 신명기 23:24~25.

48) Epsztain, L.,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People of the Bible*, 1986, p. 135.

49) Ibid., p. 136.

되었다는 전제하에 이스라엘의 법이 점령 이전의 팔레스타인법의 많은 내용들을 흡수하였다는 것이며, 오랫 동안 바빌로니아문명의 영향권 하에 있던 팔레스타인의 법은 또한 함무라비법의 영향하에 있으므로 결국 이스라엘의 모세법은 함무라비법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세번째 견해는 모세법과 함무라비법 공히 그 이전의 원시적인 셈족의 법에 의해 공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Cook, S. A., Johns, C. H. W.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Cook에 의하면, 모세법과 함무라비법에 나타나는 평행문구들과 유사점들은 일방에 대한 타방의 영향을 말해 준다기보다는 양자의 법체계 모두 공통의 셈족의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말하고 있다.<sup>51)</sup> Johns 역시 이와 같은 셈족의 법적 기원을 주장하면서 이에 덧붙여 모세법이나 함무라비법 모두 그 이전의 정착민의 법을 또한 수용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특히 모세법의 경우에는 원시적인 셈족의 법적 영향과 더불어 함무라비법의 영향을 받은 가나안 정착민의 법도 또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52)</sup>

네번째 견해는 모세법과 함무라비법 모두 공통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고대의 아라비아의 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Jeremias, J.에 의해 주장되었다. 그는 모세법이 함무라비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법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것들, 즉 문화, 관습, 윤리 등의 중립적 기반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그것이 곧 아라비아가 배경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함무라비는 아라비아인이었으며 아라비아는 오랫 동안 바빌로니아와 교역을 하였다고 한다. 한편 아라비아 사람 이드로(Jethro)가 모세의 스승이었으며 그로 인해 모세가 아라비아의 법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대 아라비아의 법과 함무라비법 간에

50) Johnston, C., "The Laws of Hammurabi and the Mosaic Code", *Johns Hopkins University Circulars*, 1903, p. 60.

51) Cook, S. A., *The Laws of Moses and the Code of Hammurabi*, 1903, p. 281.

52) Johns, C. H. W., *The Relations between the Laws of Babylonia and the Laws of the Hebrew Peoples*, 1914, pp. vi-vii.

여러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한다. 결국 모세법과 함무라비법은 모두 고대 아라비아법의 영향하에 있다는 것이다.<sup>53)</sup>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Cook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Cook에 의하면, 모세법과 함무라비법 간의 유사점이 직접적으로 아라비아로부터 기인했을 가능성은 회박하며,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즉 아라비아는 셈족의 특성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나중에 바빌로니아와 가나안에 의하여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발전된 원시적인 법과 정의의 원리들이 아라비아에서는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유사점은 이들 모두의 초기 형태인 셈족의 법에서 그 유래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sup>54)</sup>

다섯번째 견해는 모세법과 함무라비법은 그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법체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다. Patrick, D.에 의하면, 구약의 모세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독창적으로 정형화된 것(original formulation)이라고 말한다.<sup>55)</sup> 그는 모세법을 비롯한 구약법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학설들을 검토한 후, 구약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세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리고 시대를 불문하고 유대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근본주의자들은 항상 모세법의 문자 그대로에 대하여 강하게 집착하여 왔다고 말한다.<sup>56)</sup> Ellul, J.도 법은 곧 하나님의 행위(law is an act of God)라고 단언하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법은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sup>57)</sup> Westbrook, R.도 그의 저서에서 모세법과 함무라비법을 세밀히 비교분석한 후 양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 간의 실질적인 차이점은 성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원천(The Bible is a different kind of source)이라는 사실이라고 결론짓고 있다.<sup>58)</sup> 그렇기 때문

53) J. Jeremias, *Moses und Hammurabi*, 1903, p. 46.

54) Cook, S. A., *The Laws of Moses and the Code of Hammurabi*, 1903, pp. 281~282.

55) D. Patrick, *Old Testament Law*, 1985, p. 250.

56) Ibid., pp. 251~253.

57) Ellul, J., *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Law*, 1961, p. 58.

58) Westbrook, R., *Studies in Biblical and Cuneiform Law*, 1988, p. 133.

에 특히 함무라비법과는 달리 모세법은 기득권층의 목소리보다는 반대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고 있으며, 바빌로니아의 왕들은 자신들이 공평하게 법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고 스스로를 높이는 반면, 성경의 자료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그들의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질적으로 함무라비법은 인간중심적인 입장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재산권 보호적인 입법정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 모세법은 하나님 중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법은 철저히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독창적이며, 성경에 기록된 모세법도 독창성을 가진다. 백성이 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법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과 삶의 정황을 아시고 그 안에서 적합한 법을 주셨다. 그러나 이 법은 분명히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모세법은 함무라비법과는 독립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법을 제정하여 선포하시면서 이 법이 과거의 애굽의 풍속이나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의 규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법 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죽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죽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sup>59)</sup>

특히 가나안 원주민의 풍속을 죽지 말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멀하게 될 것이라고 엄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각종한 풍속을

---

59) 레위기 18:2~5.

하나라도 죽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sup>60)</sup>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죽이내는 족속의 풍속을 죽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므로 내가 그들을 가중히 여기노라<sup>61)</sup>

라고 단언한다. 이와 같은 구별성의 강조를 통해 우리는 출애굽 과정에서 제정된 모세법이 가나안 원주민의 법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인 것이다.<sup>62)</sup>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감에 있어 가나안 원주민과 조약을 맺지 않았다. 즉 가나안 원주민의 관습과 법적 전통을 수용하게 될 조약을 배격하고 그와는 달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 과정의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진 계약이며, 이 계약에서 주어진 법이 곧 본 연구의 대상인 모세법인 것이다. 시내광야와 모압평야에서 맺어진 이 계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원주민 간의 구별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계약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의 일부로 주어진 모세법이 계약에서 배격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의 법적 배경의 하나일 수 있는 함무라비법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임은 분명한 것이다.

## 2 유사점

모세법과 함무라비법에 관한 여러 비교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양 법은 몇 가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나타나는 독점금지적 요소는 그 내용과 정신에 있어 대부분 서로 관련성이 없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 유사점은 극히 부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고찰한 내용에 근거하여 고대 바빌로니아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독점금지

60) 레위기 18:30.

61) 레위기 20:23.

62) 레위기 26:46.

의 유사점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변제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결과된 채무노예의 경우 노예의 지속적인 소유를 금지하여 일정기간 후 노예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고대 이스라엘의 모세법은 7년째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은 4년째 되는 해에 자유를 되찾도록 규정하여 일정기간마다 노예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노예의무의 주기적 면제 대상이 함무라비법의 경우에는 채무노예의 경우에만 한정되고 있는 반면 모세법에는 회년제도에 의해 모든 경우의 노예가 모두 영구적인 소유대상에서 면제되고 있어 중요한 차별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양 법 모두 통일된 일정 규격의 도량형의 사용을 규정하여 공정거래를 촉진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양 법이 시행되던 두 사회에 공히 나타나던 거래과정에서의 부당한 거래관행이나 기만적 행위를 양 법 모두 금지하고 있어 양자간 유사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독점금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독점금지적 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양 법 모두 표방하고 있는 정의와 공평의 정신도 양 법의 유사점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정의와 공평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사상으로 모세법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함무라비법에도 그 서문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 3. 차이점

전술한 바와 같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독점금지에 관한 한 모세법과 함무라비법 간에는 근본적인 원리와 정신에서 큰 차이점을 가진다.

첫째, 노예소유의 집중을 억제함에 있어 함무라비법은 채무노예의 경우에 한하여 4년째 자유로워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모세법은 채무노예의 경우 7년째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채무노예를 포함하여 모든 노예에 대하여 회년제도를 적용하여 노예의 영구적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노예

소유의 금지에 관하여 함무라비법은 단 한 개 조항에서 채무노예의 방면을 한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예소유의 금지의지의 천명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채무변제적 성격이 강한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대비해서 모세법의 경우에는 7년째 채무노예의 의무면제와 더불어 모든 노예에 대한 해방을 규정하는 회년제도에 의하여 지속적인 노예소유의 집중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모세법과 함무라비법이 가지는 근본적인 노예에 대한 정신의 차이로부터 유래한다. 함무라비법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한 채무변제의무 불이행이라는 경제관계의 결과로서 노예소유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 모세법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개개인의 관계성으로부터 노예소유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군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회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되<sup>63)</sup> “회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군이 됨이라 그들은 … 나의 품군이요 나는 너 회 하나님 여호와니라.”<sup>64)</sup>

둘째, 당시 노동력으로서의 노예와 더불어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재산이었던 토지소유의 집중을 억제하는 독점금지적 요소와 관련하여 양 법은 판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세법은 회년제도에 의하여 토지소유의 집중이 주기적으로 해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함무라비법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토지와 관련하여는 토지매매가 아닌 토지임대와 관련한 규정<sup>65)</sup>만 있을 뿐이다.

이 역시 토지소유에 관한 양 법의 기본 철학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즉

63) 레위기 25:39~40.

64) 레위기 25:54~55.

65) 제42-47조

함무라비법에서 토지는 소유자인 사람의 재산, 즉 소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한 후 그것을 일정기간 후 무상으로 되돌려 준다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자신의 소유물인 토지를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할 수 있는 것이며, 임대시 발생하는 경제관계에 있어서의 공정한 거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함무라비법은 토지소유와 관련하여 재산권의 관점에서 기득권 보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토지소유의 집중을 억제하는 독점금지적 사상이 담겨 있지 않다. 이에 반하여 모세법에 있어서 토지는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하나님만이 토지의 주인이시며, 사람은 청지기로서 토지를 위임받아 보유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모세법에서는 토지소유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 토지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요, 단지 배타적 이용의 대상일 뿐이다. 모세법에 있어서의 토지소유라 힘은 토지이용권의 소유일 뿐이다. 이는 물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오직 청지기일 뿐이라는 성경의 경제관을 표현해 주고 있다.

결국 토지소유와 관련하여서 함무라비법에는 소유집중을 억제하는 독점금지적 요소를 발견할 수 없는 반면, 모세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집중의 억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50년마다 회년이 되면 토지(이용권)소유의 집중을 해소하여 원상 회복시키는 독점금지적 요소가 부각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거래, 즉 시장관계에 있어 중요한 개념인 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모세법은 전혀 언급이 없는 반면, 함무라비법에는 많은 조항에서 임료 등의 가격을 법으로 지정하여 부당한 가격이 형성되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독점금지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에는 당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측면과 양 법의 입법정신의 차이를 반영하는 측면이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시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고대 바벨로니아의 경제는 상당히 발달하여 교환경제 또는 경제적 거래관계가 보편화되어 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며,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의 경제관계보다는 사회전체적

으로 영위되는 공동체적 경제생활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입법정신과 관련하여는, 함무라비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물질관계, 즉 경제관계가 중심이 되어 재산권의 보호와 공평한 거래가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에 관한 규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모세법은 물질적 관계보다는 종교적 관계가 입법정신의 기둥이 되고 있음<sup>66)</sup>을 생각할 수 있다. 모세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간의 계약관계가 중심이 되어 있으므로 물질의 개별적 거래에서 나타나는 가격의 문제에는 별다른 관심이 표명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함무라비법에는 채무에 대한 면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반면, 모세법에는 칠년마다 채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 면제년의 규정은 소유집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으로서의 채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채무의 축적에 따른 생산집중의 가능성을 억제해 주는 독점금지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모세법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다섯째, 모세법과 함무라비법이 공히 표방하고 있는 법정신인 정의와 공평의 사상도 본질적으로는 양자간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함무라비법은 그 서문에 법의 기본 정신으로서 정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정신이 실체적 규정에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히 독점금지사상과 관련해서 고찰해 볼 때 함무라비법은 효율과 공평의 경제성과를 위한 경쟁의 공정성을 가능케 하는 집중의 억제보다는 기득권 중시적인 성향이 전반에 걸쳐 있다. 독점금지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조항들도 기본적으로 재산권 보호사상을 기저에 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모세법은 그 중심사상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의(공의)의 실현이 중심사상이며, 이에 더하여 사회구성원 간의 정의 그리고 공평 등의 사상이 법의 기본 철학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세법은 경제관계에 있어 새로 형성된 기득권의 보호보다는 본래 하나님께서

---

66) Epstein L.,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People of the Bible*, 1986, p. 136.

주신 기업으로서의 권리보호를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독점 금지적 요소가 담겨있는 조항들도 기본적으로 입법자이자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의의 실현의 시각에서 나타난 것들로서 절대적 차원의 입법정신이 상대적 경제생활의 바람직한 경제성과의 실현으로 결과되는 조항에 함유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독점금지적 요소가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 V. 결 론

본 논문은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과 고대 이스라엘의 모세법에 각각 나타나는 독점금지적 요소와 그 사상을 고찰하였고 또 이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독점금지의 사상적 기원을 성경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다수 인간의 행복을 지향하는 바람직한 사회제도의 기원을 대부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폐해를 교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독점금지정책의 기원을 구약성경의 모세법으로부터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두 법체계인 함무라비법과 모세법 간의 독립적 관계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함무라비법과 모세법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관련 조항들을 독점금지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독점금지적 요소들과 그 정신들을 추출해 내었는 바, 각각 노예와 토지의 소유에 있어서의 독점금지와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약성경의 모세법에 있어서 안식년제도와 회년제도에 의하여 노예소유의 집중을 주기적으로 해소하여 원상회복시키고 있으며, 토지소유에 있어서도 회년제도에 의하여 소유의 집중을 원천적으로 해소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토지소유의 개념과 관련하여 토지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뿐이라는 독특한 토지소유사상을 함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생산의 요소가 되는 토지와 노예의 소유집중의 억제는 또한 생산집중의 억제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독점금지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면제년제도나 기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조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고대 근동의 두 범인 모세법이 함무라비법의 영향하에 있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면 모세법을 독점금지의 기원이라고 할 수 없다. 구약성경의 모세법이 독점금지의 기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법이 서로 독립적인 법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이 두 법의 상호관계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함무라비법과 모세법은 서로 독립적인 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독점금지와 관련된 내용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본 결과 독점금지와 관련하여서 두 법의 내용이 서로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대 근동의 바빌로니아와 이스라엘의 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대의 독점금지에 대하여 비교연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과는 독립적인 구약성경의 모세법을 독점금지의 기원으로 결론짓는다. 특히 회년사상과 안식년 사상, 면제년 사상을 독점금지의 사상적 기원으로 결론짓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성경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56.
- 이의영, “미국 공정거래정책의 변천과정 연구”, 「경제학연구」 제44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1996.
- 이의영, “독점금지의 기원 고찰”, 「산업조직연구」 제3집, 한국산업조직학회, 1994, pp. 139~153.
- 이의영, “미국 독점금지정책의 관습법 배경”, 「산업조직연구」 제1집, 한국산

- 업조직학회, 1992, pp. 139~153.
- 이의영, “미국 독점금지정책의 기간별 분석”, 「경쟁법연구」 제3집, 한국경쟁법학회, 1991, pp. 99~140.
- Boren, H. C., *The Ancient World*, Prentice-Hall, N.J., 1976.
- Bocker, H. J., *Law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the OT and Ancient East*, Augsburg Pub. House, Minneapolis, 1980.
- Bohl, F. M. T., *King Hammurabi of Babylon in the Setting of His Time*, Amsterdam, 1946.
- Cook, S. A., *The Laws of Moses and the Code of Hammurabi*, Adam and Charles Black, London, 1903.
- Chirichigno, G. C., “Debt Slavery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Israel”,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he College of St. Paul & St. Mary, 1989.
- David, M., “The Codex of Hammurabi and Its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Law in Exodus”, *Oudtestamentische Studien*, vol. 7, 1950, pp. 149~178.
- De Jong, *Christianity and Democracy*, The Craig Press, 1978.
- De Vaux, R., *The Early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8.
- Diamond, A. S., *Comparative Study of Primitive Law*, London, 1965.
- Driver, G. R. and Miles, J. C., *The Babylonian Laws*, vols. 1~2, Clarendon Press, Oxford, 1952.
- Edwards C., *The Hammurabi Code and the Sinaitic Legislation*, Watts & Co., London, 1904.
- Ellul, J., *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Law*, SCM Press Ltd., London, 1961.
- Epsztein L., *Social Justice in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 People of the Bible*, SCM Press, Ltd., London, 1986.
- Finley, N. I., *The Ancient Economy*, Univ. of Cal. Press, Berkely, 1973.

- George, H., *Progress and Poverty*, N.Y., 1890.
- Ginzberg, E., "Studies in the Economics of the Bible", *Jewish Quarterly Review*, vol. 22, pp. 343~408.
- Gordon, C. H., *Hammurapi's Code*,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N.Y., 1957.
- Harper, R. F., *The Code of Hammurabi King of Babylon*, The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1904.
- Harrison, R. K., *The Archaeology of the Old Testament*, Harper & Row, Pub., N.Y., 1963.
- Jeremias, J., *Moses und Hammurabi*, Hinrichs'sche Buchhandlung, Leipzig, 1903.
- Johns, C. H. W., *The Relations between the Laws of Babylonia and the Laws of the Hebrew Peoples*, Oxford Univ. Press, London, 1914.
- Johnston, C., "The Laws of Hammurabi and the Mosaic Code", *Johns Hopkins University Circulars*,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1903.
- Jung, L., *Business Ethics in Jewish Law*, Hebrew Publishing Co., N.Y., 1987.
- Kee, H. C., *Christian Origins in Sociological Perspective*, The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1980.
- Kitchen, K. A., *Ancient Orient and Old Testament*, Inter-Varsity Press, Illinois, 1966.
- Levine, A., *Free Enterprise and Jewish Law*, Yeshiva Univ. Press, N.Y., 1980.
- Livingstone, G. H., *The Pentateuch in Its Cultural Environment*, Baker Book House, Michigan, 1987.
- Marshall, P., *Thine Is the Kingdom*, Wm. B. Eerdmans Pub. Co., Grand Rapids, 1986.
- Meek, T. J., "A New Interpretation of Code of Hammurabi sec. 117~119",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vol. 7, 1948, pp. 180~183.

- Mendelsohn, I., *Slavery in the Ancient Near East*, Oxford, 1940.
- Mendenhall, G. E., *Law and Covenant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Biblical Colloquium, Pittsburgh, 1955.
- Mishell, H., *The Economics of Ancient Greece*, 2nd ed., W. Heffer & Sons Ltd., Cambridge, 1957.
- Morgenstern, J., "Jubilee, Year of ",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 3, 1962, pp. 1001~1002.
- Moscati, S., *The Face of the Ancient Orient*, Doubleday Anchor, N.Y., 1963.
- Neufeld, E., *The Hittite Laws*, Luzac & Co. Ltd., London, 1951.
- Oppenheim, A. L., *Ancient Mesopotamia*, The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1977.
- Oppenheim, A. L., "Hammurabi",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1962, pp. 517~519.
- Patrick, D., *Old Testament Law*, SCM Press Ltd., London, 1985.
- Paul, S. M., *Studies in the Book of the Covenant in the Light of Cuneiform and Biblical Law*, E. J. Brill, Leiden, 1970.
- Polanyi, K., *The Livelihood of Man*(Pearson, H. W., ed.), Academic Press, N.Y., 1977.
- Pritchard, J. B.,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rd ed., Princeton Univ. Press, Princeton, 1969.
- Rowton, M. B., "The Date of Hammurabi",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vol. 17, 1958, pp. 97~111.
- Shepherd, W. G., *The Economics of Industrial Organization*, 3rd ed., Prentice -Hall, N.J., 1990.
- Silver, M., *Economic Structure of the Ancient Near East*, Croom Helm, London, 1985.
- Song, T. G., *Sinai Covenant and Moab Covenant*,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Cheltenham and Gloucester College of Higher Education,

1992.

- Soss, N. M., "Old Testament Law and Economic Society", *Journal of the History of Ideas*, vol. 34, 1973, pp. 323~344.
- Van Cise, J. G., "Religion and Antitrust", *Antitrust Bulletin*, vol. 23, 1978, pp. 455~481.
- van Selms, A., "Jubilee, Year of",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Supplementary Volume*, 1976, pp. 496~498.
- von Kalinowski, J. O., *Antitrust Law and Trade Regulation*, Matthew Bender and Co. Inc., N.Y., 1994.
- Westbrook, R., *Studies in Biblical and Cuneiform Law*, J. Gabalda, Paris, 1988.
- Wiseman, D. J., "The Laws of Hammurabi Again", *Journal of Semitic Study*, vol. 7, 1962, pp. 161~172.
- Yaron, R., "Jewish Law and Other Legal Systems of Antiquity", *Journal of Semitic Studies*, vol. 4, 1959, pp. 308~331.



■ 이의영 ■

성균관대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미국 Boston University, Center for Asian Development Studies의 Research Fellow를 역임, 현재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ACTS)에서 신학 전공(M.Div 학위 취득), 현 공정거래 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경제학회 경제학문현목록집 발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 약 20여 편의 논문 발표